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아 동 수 당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 제 처 심 사 를 마 칩

1. 의결주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6세 미만 아동에서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감액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11.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을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서”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여부 및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을”을 “여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급권 또는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을 “수급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4.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

요한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
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8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를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신고 방법)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법 제
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①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보호자와 그 가구의 소득액(제2항에 따른 소득과 제3항에 따른 재산의 환산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소득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한다.</u> <u>②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u> <u>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u>	<u><삭 제></u>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
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
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이자소득: 제5조제1항제1
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
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
당액 또는 할인액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
득과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
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임대소득: 부동산·동산
·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
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법」, 「공무원연금법」, 「공
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
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
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
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
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
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
조·제15조 및 제16조의2
에 따른 생활조정수당·간
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
17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및 간호수당

③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6조제11
호에 따른 입목

나. 「지방세법」 제6조제13
호에 따른 어업권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
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회원권

라. 「지방세법」 제104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
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
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한다.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4
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

기 및 선박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

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
권은 제외한다)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것

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

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보험상품

④ 제2항에 따른 소득과 제3항

에 따른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

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수급아동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과 수급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삭 제>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제출해야 -----.

<삭 제>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
험정보의 제공 동의 서면(가
구원의 동의 서면을 포함하
다)

2.·3. (생략)

4. 그 밖에 보호자와 그 가구원
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
류

제5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
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
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2.·3. (현행과 같음)

4. -----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

--

<삭 제>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사·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은 신청조사·질문과 확인조사·질문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조사·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및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질문

2. 확인조사·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질문
가. (생략)

제6조(조사·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① -----

-----.

1. -----

-- 여부를 -----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수급아동의 아동수당 수
급권 또는 아동수당의 지
급 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
시하는 조사·질문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
호나목에 따른 확인조사·질문
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금
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제6조에 따라 아
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
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 각각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④ (생략)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
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
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나. ----- 수
급권 -----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립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
청) -----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생 략)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료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
장 자료

4.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에 관한 자료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
부 자료

6.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
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8.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에 관한 자료

9.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1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
격에 관한 자료

-----.

1. (현행과 같음)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
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4.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
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
료 또는 정보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삭 제>
12.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삭 제>
13.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삭 제>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정보에 관한 자료	<삭 제>
1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삭 제>
1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에 관한 자료	<삭 제>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자료	<삭 제>
18.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공적연금 관련 기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공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	<삭 제>

제회가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
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
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
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
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2.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주민
등록번호

3. 조회의 기준일 또는 기간
 4.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
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
다.

<삭 제>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2.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3. 금융기관등의 명칭
4. 계좌번호와 금융상품명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①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
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한다.

② (생 략)

제15조(신고 방법)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
자(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
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
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

30일 이내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 방법) 아동수당을 지
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
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
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
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소득·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2.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2조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 임대의 개시·종료 등 임대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임대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5. 제2조제3항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제19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하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19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

에 통합하여 구축·운영한다.

1. · 2. (생략)

3.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수집·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4. ~ 6. (생략)

② · ③ (생략)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무</u> 5. ~ 12. (생략) 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생략) 2. <u>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u> 3. (생략)	<u><삭 제></u> 5. ~ 12. (현행과 같음) 제21조(업무의 위탁) ----- ----- ----- ----- -----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822